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844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응급의료기본계획 수립 시 취약지역 관련 사항 추가	3
2. 응급의료 실태조사 실시 근거 신설	6

I. 개요

1.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84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소병훈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1. 25.
- (3) 회 부 일 : 2024. 11.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 간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농어촌 지역은 의료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도시지역에 비해 응급의료분야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현행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으나,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관리 계획이 부재함.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관리 계획도 응급의료기본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고,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응급의료에 대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제1호라목
및 제13조의7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응급의료기본계획 수립 시 취약지역 관련 사항 추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응급의료기본계획 수립시 응급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① (생략)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 ----- -----.
1.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 다. (생략)	1. ----- ----- 가. ~ 다. (현행과 같음)
<u><신설></u>	<u>라.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u>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의 제공 관련 업무 수

행을 위하여 5년마다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해당 기본계획은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제공 등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는데,

이 중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은 국민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 교육·홍보 계획, 생활환경 속의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 응급의료의 평등한 수혜를 위한 계획으로 세분화되어 있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 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医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 교육·홍보 계획

나. 생활환경 속의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

다. 응급의료의 평등한 수혜를 위한 계획

2.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민간 이송자원의 육성 및 이송체계의 개선 계획

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지원 및 육성 계획

다. 응급의료 인력의 공급 및 육성 계획

라. 응급의료정보통신체계의 구축·운영 계획

마.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계획

바.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대비·대응 계획

3. 기본계획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본계획의 달성목표 및 그 추진방향

나. 응급의료제도 및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다. 응급의료재정의 조달 및 운용

라.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협조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경우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개정안은 응급의료기본계획 수립 시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최근 지역 간 의료인력 및 자원의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는 의료상황에서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 시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책 수립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항 신설과 관련하여, 개정안 취지에 공감함.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 시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강화와 대응 계획을 포함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법안에 찬성함.

2. 응급의료 실태조사 실시 근거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3조의7(응급의료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의 제공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5년마다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책의 영향, 집행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실시 관련 내용을 함께 규정하게 되는데, 현행법에는 응급의료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통계사업 외에는 따로 조사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관련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응급환자의 발생, 분포, 이송, 사망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응급의료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7. 제15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 관련 조사·통계사업에 관한 업무

- 이에 개정안은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통하여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응급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기본계획 주기 5년과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기를 모두 고려하여 절충적인 주기를 택한 것으로 보여짐.
- 다만, 현행법에서는 응급의료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¹⁾하고 있으므로, 기본계획 수립에 실태조사 결과를 효과적으로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반영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주기도 5년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응급의료 실태조사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함

다만,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고려하였을 때, 조사 주기를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인 5년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법제처)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도록 한 응급의료 실태조사와 현재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통계 조사·사업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유사한 업무가 중복 수행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응급의료 실태조사와 응급의료 관련 통계 조사·사업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9